

식품안전정책과 GMO 표시방안

박 정 구 /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1. 서 언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양식도 변화되어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성과 식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어, 식품행정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은 그야말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항생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에 의한 위해발생도 광역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유전자재조합식품 혹은 새로운 식품첨가물 등의 출현으로 식품의 관리영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WTO 체제의 출범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 조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며 수입식품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바, 그에 따른 각종 식품 및 첨가물의 대한 규제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출입국간에 이견과 무역마찰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간 기준·규격들의 표준화에 관한 요구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식품행정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제발생에 따른 사후관리체제에서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는 식품정책과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현주소는 아직도 영세업자가 전체의 85%가 되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기능은 매우 허술할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식품행정은 식품산업이 규제대상산업이라는 기존의 관리방식을 벗어나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해 주면서 이와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사전예방 안전관리체제로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국제수준에 걸맞은 선진식품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생명공학(Modern Biotechnology) 기술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유전자재조합(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식품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에서는 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을 위한 제정(안)을 지난 4월 10일 입안 예고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E.U, 영국 등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도 2001년 4월부터 표시를 실시하기로 하고, GMO 농산물의 최대 개발·수출국인 미국내에서도 표시제 시행에 움직임이 있는등 국제적 추세가 표시제를 시행하려는 방향이다. 따라서 이제 GMO 표시제에 관한 논란은 GMO 표시제의 필요성의 논란에 중시부를 찍고,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표시제 시행

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후 관리 방안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식품안전관리의 개념 및 특성

인류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WHO (세계보건기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원료(재배·양식) 단계에서부터 생산·제조·가공은 물론 운반·저장·판매 등의 유통단계를 거쳐 식품을 사용·조리·소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식품에 요구되는 위생적인 안전성(Safety), 식품성분상의 완전무결성(Wholesomeness), 관능적인 기호성 및 품질상의 건전성(Soundness)의 유지와 향상을 기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식품안전관리란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필요한 이론과 실재를 다루는 분야로서 소비자인 일반국민은 식품의 영양성분의 파괴나 주요성분의 변질 및 부패등 식품위생상의 품질 또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식품안전관리가 요구되어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과학·기술적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관리는 무엇보다도 고도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충분한 연구, 시험을 거쳐 산출된 과학적·기술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즉 최근의 식품과학은 미생물학, 유전공학, 독성학등 다양한 학문이 복합된 첨단 학문으로 새로운 가공기술과 가공식품의 출현, 그리고 다양한 위해물질등의 등장으로 식품과학의 기술적인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각종 식품과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 포장 등에 대한 규격 및 기준등이 식품공전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운영되므로, 과학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시험성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독성 또는 발암성 물질에 대하여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요망이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2. 식품안전관리의 국제간 조화

국제무역의 자유화 조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수입식품이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감시 및 검사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각종 식품 및 첨가물의 대한 규제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점차 까다로워짐에 따라 수출입 국간에 이견과 비관세 무역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GATT에 의한 WTO 체제가 출범하였으며, 특히 식품의 수출입에 관계되는 위생규제 조치인 SPS 협정 (Agreement of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세계각국의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경우, 각국정부는 주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일반적인 처리를 하거나 불필요한 구제로 무역상의 장애나 상호마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과학적인 위험성 평가에 근거하며, 식품위생상 조치는 국제기준인 FAO/WHO 의 Codex 규격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외교적 측면에 입각한 식품위생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식품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국제간의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3. 소비자 알권리의 보호

이제 우리나라도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접어들어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다양한 식품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각

중 음식점등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편리한 식생활시대에 살고 있지만, 식문화의 형태는 소비자들이 이미 가공되어진 식품을 그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식생활 시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식품위생정책은 식품에 대하여 정직한 표시를 하고, 식품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며 영업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식품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4. 식품산업 진흥의 제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의 건강지향성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욕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계는 나름대로의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나,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도·감독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식품산업이 규제대상산업이라는 기존의 관련업체 관리방식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식품제조 전 과정에 걸쳐 과학적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되 업계에 최대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영세식품업체가 계열화, 전문화되어 대기업과 상호 보완적인 생산체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세제, 금융, 연구지원 등으로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지향에 대응함과 동시에 식품업계에서도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육성시키는 시책이 동시에 이룩될 때 비로소 식품의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식품위생관리의 과제와 추진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식품위생관리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적극

적이고 실천력이 있는 식품위생 행정정책의 전개만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식품위생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학기술에 입각한 정책추진, 둘째, 소비자의 여망을 중시하는 자세, 셋째, 국제적인 연대와 정보의 교환, 넷째, 생산업체·유통업체·판매업체등의 협조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향후 식품안전관리는 최신 기술정보에 근거한 효율적인 수거·검사와 위해물질관리 중심의 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영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식품안전 예보제를 확대 실시하고 소비자의 식품선택을 표시기준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식품행정조직의 일원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 체계는 원료 생산에서부터 제품 제조와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에따른 책임과 의무가 명백해야하므로, 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립됨에 따라 안전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위생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단일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 단일체제는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정책, 표준 설정, 위해 평가, 분석 실험,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수·출입 식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체제등을 망라한 총체적인 운영 체제이어야 한다.

식품위생 관리체제를 단일화함으로써,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운용할 수 있고, 위생검사 비용 및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의 간편화와 효율화도 기대된다. 한 업체에서 생산된 단일 품목이 두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중관리가 되는 것은 생산 및 판매체계가 복잡해지며, 이로 인한 관리비용의 추가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대된다. 그러므로, 단일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제품의 국제 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능력이 증대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의 건강과 식품의 위생안

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최신 기술정보에 근거한 식품의 안전관리

식품위생관리는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문행정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지식과 충분한 입증 하에 평가되고 실천되어야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대부분 사회생활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식품사고들은 사전예방적이 못되고 거의가 사후처리적인 조치들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발생한 식품사고의 주된 것은 여러가지 식품환경의 여건 변화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식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대책은 사전예방적 행정관리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식품관계 영업자는 그 책임과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자주적인 관리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HACCP제도의 확대 실시

HACCP 제도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각 위해요인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건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양질의 식품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방적 위생관리체계 시스템으로, 종전의 관리방식은 위해발생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HACCP은 각 제조공정별로 위해 요인을 관리·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위해발생 요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식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도이다. 식품간의 국제교역시 HACCP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HACCP에 따른 위생관리는 FAO/WHO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Codex 위원회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밖에

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등에서 HACCP에 따른 관리제도가 이미 도입되고 있으며 그외 여러나라에서도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며 우리 정부는 식품의 위생안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국제 기준·규격과의 조화를 위하여 1992년부터 식품산업체에 HACC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1995년부터 시범적용사업을 시행하여,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 제32조의2항(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HACCP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정부는 HACCP 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업종별로 전업체에 일률적으로 의무적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적용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적용업체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업체의 자발적인 적용을 유도하는 자율적인 지정제도의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HACCP 제도의 적용확대사업은 국민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바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하여 HACCP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수행해 나가며 과학적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제조현장에 적용하여 실제적용상의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전식품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2) 기초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의 강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콩나물, 간장, 고추장, 두부, 참기름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기초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다소비식품의 안전성유지와 수거·검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년간 위반내용이 반복되거나 다소비식품등 20개 품목을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선정하여 매월 반복 수거·검사하는 한편, 염경채류등 신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매월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이 안전하게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 등에 유래되는 식품오염, 식품의

보존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첨가물 등 화학물질의 식품에의 혼입, 기타 유해물질 함유 식품의 유통 등 복잡하고 다양화된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추진하며 식중독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발생요인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식중독 방지를 위한 지도 계몽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의 기준·규격등을 정비하여 규제절차와 방법을 완화하는 대신 잔류농약 및 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품질관리체계의 기준·규격을 안전관리체계의 기준·규격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허가되는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Data의 평가, 1일 섭취허용량 (ADI : Acceptable Daily Intake)의 설정, 잔류기준의 설정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수입식품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수입식품의 위해물질정보, 수출국의 상황, 과거의 위반사태 등 광범위한 정보를 D/B화하여 위해발생 가능성에 따라 검사대상을 분류하는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축된 D/B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수입식품검사 전산망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과학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시료채취를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과 통일되고 객관적인 검사를 위한 관능검사 기준 등 합리적인 수입식품 검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과거 부적합 이력 및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강화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품공전을 국제수준으로 개정·보완하여 국제규격과 조화를 도모하고, 부적합 발생율이 높거나 반복되는 식품을 특별 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반복 수거 및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유통식품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되었던 각종 안전정보 등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등 수입

식품의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정확한 구매정보 제공을 위하여 표시기준을 개정·보완하는 등 총체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기준·규격 및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소비자 식품위생의식의 함양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식품의 유통을 위하여는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자·판매자등 식품관계 영업자와 소비자간의 상호 이해와 인식으로 각 분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식품위생 교육은 물론 의식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소비자에게 식품 및 첨가물의 안전성·건전성·유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계몽하는 등 잘못된 인식과 전문지식의 결여로 올 수 있는 오해를 해소시켜 나가는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제반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기준제도를 확립하고, 가공식품의 선택과 이용에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표시기준에 의한 식품의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GMO 식품 표시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그동안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시행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를 작년 11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8차에 걸친 회의결과 그 합의내용을 이번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기준(안)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 하였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표시대상은 원칙적으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원재료로 한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제품을 표시대상으로 하며 제조·가공중 유전자

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표시방법은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사용식품”을 표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로 옆에 괄호로써 “유전자 재조합된 ○○○”이라고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표시의무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기타식품판매업자등 모든 유통단계별 판매자로 규정하여 각 유통단계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입안예고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안)에 대하여 소비자, 업계, 관련부처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WTO 통보절차등을 거쳐 2000. 7월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시기는 지난 1월 12일 식품위생법에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 근거 조항 마련시 정하였던 2001년 7월 12일로 하였다.

V. GMO표시제의 효율적시행을 위한 선결과제 및 검토사항

현실적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은 외관적으로는 기존의 농산물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원료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명확하게 관리되어 파악되거나, 시험분석방법에 의해 명확하게 검증될 수 있는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행이 어려운 현실적인 면이 있으며, 특히 허위표시를 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후관리방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과학적 검증을 기

본으로 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시행을 위하여 의무표시대상품목의 선정,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공인검사법의 개발등을 시급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표시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정보제공이나 소비자의 불안에 대응한다고 하여 표시에 대한 검증방법이 확보되지 않은 채 표시를 실시하면, 결국 소비자의 신뢰성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검증방법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은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한 DNA의 분석과, 면역학적 기법을 이용한 단백질의 분석방법이다. 그러나 PCR법이나 면역기법을 이용한 단백질의 검출방법들은 정확성과 정밀성의 향상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이 과정에서 PCR기술로 확인할 때 분석가능한 시료양, 시료채취문제, PCR실험에 있어서의 의사반응(false signal)의 처리문제, 가공식품에서 정량분석등 전문적,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제 시행을 위하여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아직 주요 외국 및 국제 기구에서 표시에 대한 국제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분별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분별유통을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국가적으로 분별유통을 요구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문제는 국제간의 합의와 조화가 필요하므로 우리나라도 Codex위원회 및 환경다양성 협약, OECD 등 생명공학응용식품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미국·EU등의 외국과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재배·유통현황 및 과학적 검증기술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교환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유통실태 등에 대해 폭 넓은 정보제공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VI. 결 언

이상으로 우리나라 식품위생관리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시행방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개선 대책등을 중심으로 식품

안전관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관련정책은 이제는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한 분야임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문제발생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국제동향을 따라가는 행정에서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조화시켜 국제수준에 걸맞는 선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식품행정체계의 단일화 및 합리적인

업무체제의 구축,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정보화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위생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식품위생관리의 목적하는 바가 이룩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열심히 지키고 실천하는 주체가 없다면 효율적인 식품의 안전관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식품업계도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식품안전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